##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

로 명 성

현시기 각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 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정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무역 및투자활동, 생산, 부동산거래, 금융, 세금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혜적인 우대조치들이실시된다. 또한 입출국이 편리하고 각종 수속절차가 간소화되여있으며 개발 및 경영방식을 편리하게 정할수 있는 등 투자와 기업경영활동에서 여러가지 편의가 보장된다.

국가가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조치를 실시하고 편리한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경제개발구안의 경제활동에 국내지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 공함으로써 개발구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선진과학기술도입과 첨단산업창설과 같은 경제 적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는 국가가 개발구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서 만 적용하는 특혜적인 법과 규정, 질서이다.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에는 개발구안의 기업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리용, 기업 창설, 생산과 판매,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특혜적인 법규정들이 포함된다. 여기 에서 기본은 특혜적인 세금제도 및 부동산거래제도와 수출입제도를 비롯한 기타 경제활 동조건의 보장이다.

경제개발구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특혜적인 세금제도이다.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국가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취하는 여러가지 유리한 법적조치들이며 개발구기업들에 대한 세금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경제개발구에 국한시켜 제정하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된다.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경제개발구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기업들의 리윤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하여 외국투 자가들은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서의 세금법과 규정을 다른 나라의것과 대비하고 수익 성정도를 타산한 다음 투자결심을 내리게 된다. 이로부터 다른 나라의 세금법에 비하여 유리한 세금제도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자극하여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이고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 나아가서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혜적인 세금제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세금종류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와 규모는 국가적리익과 개발구기업들의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제정되여야 한다. 그것은 세금의 종류와 규모에서 국가와 기업의 리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정과 관련된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클수록 국가적리익은 크지만 기업의 견지에서는 리윤감소로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리익을 보장하면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조세 부담을 적게 받도록 세금종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세금분야에서 국가적리익과 개발구기업들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이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천인것으로 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기업운영에 부과되는 세금과 료금에는 리윤세 혹은 기업소득세, 로동보수세, 재산세, 재산이전세, 리익배당금세, 자본소득세, 금융거래세, 오물수집세, 차량세, 도로세, 기타 세금과 료금들이 포함되며 나라별로 기업리윤에서 차지하는 총세률을 볼때 프랑스는 64.7%, 도이췰란드는 49.4%, 인디아는 62.8%, 이딸리아는 65.8%, 일본은 49.7%, 로씨야는 50.7%, 에스빠냐는 58.6%, 영국은 34%, 미국은 46.3%를 부과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내외투자기업들에 기업소득세외에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자원세, 토지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으며 총세률은 리윤의 63.7%에 달한다.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서는 외국투자기업들과 외국인들에게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 거래세, 지방세, 상속세, 자원세 등 몇가지 종류의 세금을 적용하고있으며 그 세률 또한 낮게 적용하고있다.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의 25%이지만 경제개 발구에서는 14%이며 특히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이다.

특혜적인 세금제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개발기업에 세금특혜를 적용하는것이다. 개발기업에 세금특혜를 주게 되는것은 개발기업이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정리와 하부 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을 맡아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개발기업이 맡아하는 토지정리와 하 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은 많은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된 자금보상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토지리용권판매와 하부구조사용료청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개발기업이 토지와 하부구조건설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자면 개발기업에 경영권취득과 세금납부 등에서 일 정한 특혜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및 공공시 설운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서 표현된다.

개발기업에 세금특혜를 적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개발구기업들에 면세 및 감세 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면세제도는 응당 받아야 할 세금을 일정한 기간 면제하는 제도이며 감세제도는 받아야 할 세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면

세 및 감세제도는 기업의 리익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혜적인 법적조치이다. 개발 구기업들에 있어서 면제 또는 감소된 세금규모는 곧 그대로 기업의 순리익으로 된다.

면세 및 감세제도는 경제개발구안의 모든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다 실시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실시된다. 그것은 면세 및 감세제도의 적용기간과 세률을 경제개발구의 개발운영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각이하게 실시하여야 특혜적인 세금제도실시의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다.

우선 경제개발구에서는 장려하는 부문에 대한 기업경영활동에 면세 및 감세를 우선 적으로 적용하며 그것도 투자대상이나 기업경영활동의 특성에 따라 각이하게 실시하고있 다. 여기에서 기본은 경제개발구의 개발운영에서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 업들에게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소시켜주는것이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 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범위에서 덜어주고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에 장기간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면세 및 감세제도를 실시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장기간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특혜는 곧 개발구안에서 기업운영을 장려하고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로 된다.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주고있다.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주고 있다.

경제개발구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둘째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를 세우고 실시하는것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개발구의 부동산에서 기본은 토지와 건물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 거래제도는 세금제도와 함께 외국투자기업의 리익규모에 직접적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기 업창설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리용을 전제로 하며 부동산거래의 비용과 그로 부터의 수익규모가 상품거래에 비하여 상당히 큰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기업들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유리한 조건에서 얻으려고 한다. 반면에 경제개발구에서는 외국투자가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경영활동에 유리한 부동산을 쉽게 얻거나 거래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준다.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는 국가가 정한 부동산거래법과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는 부동산의 취득, 양도, 임대, 저당, 거래가격, 리용기간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와 방법들을 간소화하고 국제관례대로 진행하면서도 신속 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규정, 질서로 이루어져있다.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에는 개발기업과 다른 국내외기업들이 참

가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은 국가로부터 개발사업권을 부여받은 개발기업이 맡아한다. 개발기업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개발사업권, 지방정권기관과 맺은 개발계약, 국토관리기관과 맺은 토지리용계약, 지역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자기가 직접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를 건설할수 있다.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방대한것으로 하여 개발기업은 청부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내외기업들을 인입할수 있다. 개발기업이 여러 국내외기업들과 청부건설계약체결방법으로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를 건설하도록 하면 그들사이에 경쟁의욕을 자극하여 합리적인 투자로 가장 훌륭하게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진행할수있다.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여러가 지 건물건설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는 관리기관의 사무실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들도 건설된다. 이러한 공공건물들과 시설물들의 건설은 개발총계획에 반영 되여 주로 개발기업이 맡아 진행한다.

그러나 개발기업뿐아니라 다른 국내외기업들도 개발기업 또는 관리기관과 청부건설 계약을 맺고 여러가지 건물건설에 참가하며 건설한 건물을 거래하여 일정한 리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건물건설을 개발기업만이 독점적으로 맡아하도록 하는것은 개발기업에게만 리익을 가져다주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의 국내외기업들이 개발기업으로부터 토지리용권을 구매하고 필요한 건물을 건설한 다음 건물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국가의 리익과 기업의 요구에 맞게 투자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으로된다.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부동산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기업이 부동산거래에서 자기의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게 하는것은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토지리용계약에 따라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개발기업은 토지리용권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개발기업의 토지리용권리에서 중요한것은 정리한 토지의 리용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수 있는 권리와 정리된 토지에 하부구조대상들을 비롯한 건물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거나 해당 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해줄 권리, 하부구조대상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해줄 권리 등이다.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투자가들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으면 기업경영에 적합한 토지와 건물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필요한 면적의 토지리용권을 구매한 다음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구매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의 토지와 건물취득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다.

하나는 기업들이 개발구의 토지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토지취득은 기업이 개발기업으로부터 정리된 토지리용권을 구매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토지를 구입한 다음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할 때 쓰 인다.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은 토지를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의 소유로 되며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취득은 개발기업으로부터의 양도 또는 임대형식으로 실현된다. 이 방법은 경제개발구안에해당 기업에게 적합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리용된다.

경제개발구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거래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은 경영활동과정에 여러가지 리유로 이미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주거나 채무리행 또는 지불담보를 위하여 저당잡히는 방법 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거래할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는 양도, 임대, 저당 등의 방식 으로 진행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부동산거래에서 신용성, 공정성, 합법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외국투자기업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토지와 건물들을 취득하며 거래할수 있게 한다.

경제개발구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셋째로, 편리한 경제활동보장제도이다.

경제개발구에서의 특혜제도는 세금부과나 부동산리용뿐아니라 외국투자기업들의 경 영활동에 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실시된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며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특혜적인 세금 또는 부동산리용과 달리 기업들의 간접적리익으로 되지만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편리한 경제활동보장제도에는 인원출입, 물자반출입, 관세납부, 재정회계, 대부와 외화리용, 광고, 보험, 대리와 위탁, 경매와 입찰, 신탁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조치들이 속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업들의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한 조건들이다.

편리한 경제활동보장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에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의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경제개발구기업의 운영 뿐아니라 경제개발구의 운영에도 직접적영향을 줄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인원출입과 물 자반출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활동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경제개발구의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은 출입국사업기관과 세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이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의 협력밑에 진행한다. 출입국사업기관과 세관은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더욱 높여 경제개발구와 국내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들사이에 많은 물자와 자금들이 류통되며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할수 있게 한다.

편리한 경제활동보장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제무역활동을 보장하며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의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수출할 때와 위탁무역, 중계 무역 등의 목적으로 물자들이 개발구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관세를 부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안에서 거래되는 무역상품들과 경영용물자들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개발구의 기업들이 국내기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무역활동을 벌리는 경우

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개발구에 들어왔거나 경제개발구안에서 가공된 물자들이 국내에 판매될 때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세관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특혜관세제도실시의 경제적효과 를 높여야 국내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특혜적인 경제활동보장제도에는 이밖에도 원산지증명서발급, 보험과 대위권행사, 대부, 경매와 입찰, 위탁과 대리, 서신비밀보장 등 여러가지 경제활동들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경제개발구특혜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개발구들이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경제개발구, 특혜제도